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5. 27 선고 2020가단3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경재

피고1. B

2. C

3. D

4. E

5. F

변론 종결2020. 5. 13.

판결 선고2020. 5. 27.

주 문

1. 피고 C, D, E, F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96. 7. 11. 접수 제283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은 G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판결)

판사장성진

별지